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장기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5년 4월 1일

□ **정정 사유**

- (1)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
- (2) 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

□ **정정 내용**

| 항목 | 정정전 | 정정후 |
|---|---|--|
|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|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| 연혁기재 | <u>2014. 10. 16. 일괄신고서 효력 발생</u> <u>2014. 10. 28. 투자신탁 최초 설정</u> |
| 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| 2014. 8. 31. | <u>2015. 2. 28.</u> |
|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모자형 구조 |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 | <u>트러스톤장기고배당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 |
|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 | 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| <u>환매조건부 매수</u>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|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 | <u>트러스톤 장기고배당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 |
|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| 공제제도: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% | 공제제도: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 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<u>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 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 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u> |

| | | |
|---|--|--|
| | <p>분리과세한도 : 1,200 만원(공 적연금소득 제외)</p> <p><u>특별 중도해지 (연금외수령) 사 유:</u> 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의 3 개월 이상 치료·요 양,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 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<u>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:</u> <u>기타소득 13.2% 분리과세 (지 방소득세 포함)</u></p> | <p><u>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 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에서 제외됩니다.</u></p> <p>분리과세한도 : 1,200 만원(공 적연금소득 제외)</p> <p><u>단,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 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</u></p> <p><u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:</u> 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 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치료·요양, 금융기 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</p> <p><u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:</u> <u>연금소득세 5.5~3.3%(지방소 득세 포함)</u></p> |
|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| | |
| 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 한 사항 가. 의무해지</p> | <p>법 개정사항 반영</p> | <p><u>(5)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 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는 제외합니다.</u></p> |
| 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 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</p> | <p>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</p> | <p><u>③회계감사</u> <u>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 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 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.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|

| | | |
|--|--|--|
| | |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 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|
|--|--|--|